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13.10.4 일부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조기층 : 15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불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추가(안 별표 3)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 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공사 시 다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다짐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 면적 및 최소 폭을 1.2m로 조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또한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도 복구공사의 정밀시공 및 주민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 도로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0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13.10.4일부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추가(안 별표 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76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1.16.~2014.2.5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최소굴착면적란 및 최소굴착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별표 2**의 보도란 다음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래 : 3cm 콘크리트기층 : 10cm 보조기층 : 15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불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 면적	<u>0.7m×0.7m</u>	<u>0.8m×0.8m</u>	<u>0.7m×0.7m</u>	최소굴착 면적	<u>1.2m×1.2m</u>	<u>1.2m×1.2m</u>	<u>1.2m×1.2m</u>
최소굴착 폭	<u>0.7m</u>	<u>0.8m</u>	<u>0.7m</u>	최소굴착 폭	<u>1.2m</u>	<u>1.2m</u>	<u>1.2m</u>
[별표 2] <u>〈신 설〉</u>				[별표 2]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용범위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 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 조 기 층 : 15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불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 포장	표층(아 스 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 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별표 3]				[별표 3]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u>국토해양부</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u>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u>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 ----- <u>국토교통부</u> ----- ----- <u>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u> , <u>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u> 등 ----- -----.			